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06. 12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8. 06. 16

다. 상 정 일 자 : 2008. 10. 27 (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 상정, 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2008년 7월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건강보험료와 통합되어 관련된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관련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노인복지법」 제4조

4. 주요내용

가. 조례명 명칭 변경

나. 용의 정의(안 제2조)

다. 지원대상 및 시기(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대상자 선정, 조사 실시(안 제5조, 제6조)

마. 보험료 지급 및 대상자 관리 등(안 제8조, 제9조)

5. 검토의견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건은

-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적절한 보건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화사업과 연계하여 시책사업을 추진함이 필요충분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됨
- 또한 중구를 비롯하여 기장군 등 8개 구·군에서 기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여타 구에서도 입법예고 등 준비 중에 있으며
-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하여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노인관련 비용충당에 필요한 금원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위 조례 전부개정조례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의결